

<유학비자 구비서류 안내>

1) 공통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x4.5cm)
- 표준입학허가서
 -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같음.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대사관 지정 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 ※ 지정병원 5곳 : △ 중앙폐병원, △ 하노이 패밀리메디컬, △ 장안병원, △ 바오선병원, △ 홍응옥병원
- 유학/어학연수비자 신청자 작성자료

2)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영사인증 불가)
- 영사확인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교육기관 원본대조 필)
 -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입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3)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원본
 - 학위과정* : (수도권)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 (예외) ① D-2-4~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3개월) 충족 불필요
②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
- 교환학생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976,609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 어학연수과정 : (수도권)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지방)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해당 증명서 발급 직전 분기별 기준일(1.1./4.1./7.1./10.1.) 환율로 계산
-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재정증빙서류

-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정보증의 경우
 - ※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부담 협약서 원본 및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그 외 재산 증명서류

-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정보증의 경우
 - ※ 부모 모두 부재 또는 한국 체류 중일 경우,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이 재정정보증가능
 - 호적부,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협약서 원본 (인감 날인)
 - 재정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재정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정보증 서류
 - ※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정보증서 원본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 재정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사본 및 통장 사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기관의 직인확인 서류로 대체가능

-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 ※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최근 3개월이내 발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협약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 (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 장학증서 원본 (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4) 과정별 제출서류

- 우수 인증 대학(불법체류율 1%미만)
 - ※ 단, 어학연수(D-4)의 경우 우수인증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결핵진단서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신분증 사본

- 한국어연수과정 (D-4-1)
 - 공통제출서류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 포함)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D-2-1~D-2-4)
 - 공통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특정연구과정 (D-2-5)
 - 공통제출서류 (단,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

- 교환학생 (D-2-6)
 - 공통제출서류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
 - ※ 베트남어로 발급된 경우, 번역공증본 (국문 또는 영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협정서(MOU) 등)
 -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일-학습연계 유학 (D-2-7)
 - 공통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로 같음.

- 방문학생 (D-2-8)
 - 공통제출서류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5) 유의사항

○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만 해당
 -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구 분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원화) 뿌리산업양성학과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전공심화) 이상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원화) 예체능 학과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심사 소요일*
 - (재량사증)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20일
 - (전액 장학생, D-2-4~D-2-8, 사증발급인정서)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